■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임시조치 통보서 (가정폭력)

0000. 00. 00.

1. 행 위 자

성 명 : 000 (00세, 성별)

주 거 :

2. 피 해 자

성 명 : 000 (세, 성별)

주 거 :

직 장 :

3. 임시조치 통보일시 · 장소 및 방법

일시 · 장소: 0000. 00. 00.(요일) 00:00, 장소

방 법 : 0000 (예시 : 대상자 대면하여 통보, 전화상 통보 등)

4. 임시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00법원)

[]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전기통신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 송·수신

[]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호.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5. 담 당 자

소 속 : 00경찰서 00과 00계

성 명 : 계급 000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5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 또는 제6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을 함께 통보

※ 적절한 방법으로 임시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서는 수사기록에 편철